

이 보도자료는 2023. 8. 11.(금)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박승환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보도자료

2023. 8. 11.(금)

제목

신림동 흥기난동 살인 사건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고 모방범죄가 뒤따르게 한 「신림동 흥기난동 살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면밀한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 조선(남, 33세)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죄로 오늘(8. 11.) 구속 기소하였음
- 전담수사팀은, 사건 송치 전부터, ①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송치 직후, ② 전담수사팀장 주관 현장검증 실시 ③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접속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④ 주거지, 구치소 등 압수수색 ⑤ 통합 심리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임상심리분석 ⑥ 클라우드 저장 자료 분석 ⑦ 가족, 친인척, 소년 시절 지인 등 총 35명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음
- 수사결과, 본건은 피고인이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행으로서,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임

- 본건은 피고인이 **비합리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공개 범죄**를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서, 뒤이은 모방 범죄와 살인예고글 폭증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일으켰으므로, **전담 수사팀**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살인미수 피해자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여 **장례비, 치료비, 긴급생계비, 유족구조금**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절차 참여와 양형진술을 지원할 것임**

1 피고인 및 피해자

1 피고인

- 조선(남, 33세, 무직)
 - 범죄전력 20회(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소년부 송치 14회, 기소유예 3회)

2 피해자

- 살인, 살인미수 피해자는 20~30대 남성 4명으로 **1명 사망, 3명 상해**

피해자	피해 상황	죄명
A○○(남, 22세)	다발성 자창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	살인
B○○(남, 32세)	왼쪽 목 부위 3cm 창상으로 봉합수술	살인미수
C○○(남, 31세)	목 부위 3곳, 등 부위 3곳 열상 등으로 수술(입원치료 중)	상동
D○○(남, 30세)	얼굴, 후두부 열상 등으로 수술	상동

2 공소사실 요지

- '22. 12. 27. 19:34경 익명 사용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하면서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공연히 게시 [모욕]
- '23. 7. 21. 12:03경 인천 서구에서 서울 금천구까지 택시 무임승차 [사기], 같은 날 13:59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마트에서 식칼 2개 절취 [절도], 같은 날 1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까지 택시 무임승차 [사기]

- '23. 7. 21. 14:07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A○○(남, 22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부위 등을 약 18회 찔러 다발성 자창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함 [살인]
- '23. 7. 21. 14:08경 위 식칼로 피해자 B○○(남, 32세)의 왼쪽 목 부위를 3~4회 찌르고, 피해자 C○○(남, 31세)의 목, 등 부위를 7회 찌르고, 피해자 D○○(남, 30세)의 얼굴, 후두부 등 부위를 11회 찔러 차례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 [살인미수]

3 수사경과

- '23. 7. 21. 사건 발생(14:07), 현행범 체포(14:20)
- '23. 7. 23. 구속영장 발부
- '23. 7. 28. 구속 송치, 전담수사팀 구성(형사3부장, 소속 검사 3명)
 - ▶ 전담수사팀장 주관 현장 검증 실시
 - ▶ 압수수색검증영장 5건 청구
- '23. 8. 1. 피고인 및 고모의 주거지 각 압수수색
- '23. 8. 1.~10. 피고인 조사 및 심리분석,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 및 이메일 등 압수수색, 피고인의 가족·친척·과거 친구 등 광범위한 주변인물 조사, 구치소 압수수색, 범죄 피해자 지원조치 등
- '23. 8. 11. 구속 기소

《검찰 주요 보완수사 내용》

[상시 강력 당직 체계 가동] 사건 발생 즉시 ▶ 관할 경찰서 수사팀과 비상연락 체계 구축 ▶ 변사체 직접 검시, 부검영장 청구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 의견진술

[현장검증/압수수색] ▶ 생생한 사건 분석을 위한 현장검증 실시(송치 당일 전담 수사팀장 주관) ▶ 범행 동기, 범행 과정 등 파악을 위한 인터넷 검색 내역, 클라우드 저장 정보 내역, 게임 접속 내역, 커뮤니티 게시물 내역, 주거지 등 2곳, 구치소 수용거실 압수수색

[범죄심리 분석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피고인의 성향과 범죄에 이르게 된 심리를 철저히 분석하기 위한, ▶ 대검 통합심리분석(임상심리분석, 행동분석, 심리생리검사 등), ▶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통한 임상심리평가분석 ▶ 소년분류심사원의 평가 결과 분석 등

[범행동기 규명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 ▶ 학창시절 생활기록부, 소년분류심사원 평가 자료, 범죄 전력 관련 사건 기록, 교육시설 등록 정보, 검정고시 결과, 진료내역, 의무기록, 클라우드 저장 정보,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피고인 메모·편지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가족, 친인척, 친구, 동료, 지인 등 참고인 35명 조사

4 수사결과

가. 사전 증거인멸 및 범행도구 준비 등 계획적 범행

- 피고인은 범행 후 체포될 경우, 휴대폰과 컴퓨터에 저장해 둔 불법적 정보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 범행 전날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 08:00~09:00경에는 주거지 인근 산책로에서 망치로 컴퓨터 저장장치를 파손
- 범행에 사용할 식칼을 미리 준비하면서, 여러 자루의 식칼을 구입하면 의심을 살 것을 염려하여, 마트의 카운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진열된 식칼 2자루를 몰래 절취

나. 게임 중독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 살해 시도

- 피고인 진술, 관련자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인터넷 검색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근 8개월간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거나, 게임 관련 동영상 채널을 시청하는 등 게임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

특히 피고인은 게임 플레이어가 1인칭 시점에서 무기나 도구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1인칭 슈팅(shooting) 게임’에 빠져 있었고, 타인을 공격하여 살해하는 내용의 게임 영상도 장시간 시청하며, 범행 당일 아침에도 휴대전화로 게임 동영상을 시청

- 피고인은 약 2분간, 110m 구간의 골목길에서 식칼로 4명의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피해자들을 공격한 횟수의 합계가 총 40여 회에 이릅니다. 특히 피고인은 ①가벼운 땀걸음, ②피해자의 뒤나 옆에서 공격, ③얼굴, 뒷목, 옆구리 등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를 집중 타격, ④범행 시도 후 신속히 재정비, 새로운 타겟 물색 등의 특이한 행태를 보였는데, 마치 1인칭 슈팅 게임을 하듯 잔혹하게 범죄를 실행

다. '현실 불만, 좌절'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

- 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은 가족관계 붕괴, 대학·회사 등 사회생활 부적응, 실연, 경제적 곤궁 등이 겹쳐 실패감, 열등감으로 '현실 불만, 좌절'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
- 특히 피고인은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적개심, 분노로 분출
-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젊은 남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젊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평소 자주 왕래하여 잘 알고 있던 '신림동 먹자골목'으로 이동하여 범행

라. 실패·좌절에 따른 은둔생활 중 외부자극으로 반사회성 발현

- 피고인은 대학, 취업, 결혼 등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열등감, 사회적 소외 등으로 '22. 12.경부터는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게임, 동영상 시청,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 작성에 몰두
-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과 관련하여 모욕죄(본건 공소사실에 포함됨)로 고소되어, 본건 범행('23. 7. 21.) 직전인 '23. 7. 17.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열등감, 좌절감이 적개심과 분노로 변하여 젊은 남성에게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

※ 피고인은 “모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몰래 촬영한 사진 등 불법적인 영상으로 처벌받을 것이 걱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7. 21. 범행 당일에도 ‘모욕죄 성립요건’, ‘야동 스트리밍 처벌’ 등을 검색

《피고인의 심리분석 결과》

무직 상태의 장기화에 따라 자기불행감이 증가하고 자극적인 게임에 몰두하는 자기 고립의 상태에서 경찰 소환, 취업문제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분노감을 타인과 사회에 전가시키고 폭력적인 공상이 활성화되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급작스러운 분노 폭발 행위가 발현

마.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한 양형 관련 수사

- 전담수사팀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하여, ▶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 확보, ▶ 35명에 이르는 주변인물 조사, ▶ '묻지마범죄'와 관련된 해외 자료, 논문, 보고서 수집·분석
- 특히, 본건 범행 이후 동종 이상동기 범죄의 발생, 모방범죄 살인 예고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 불안이 야기된 점 등 범행 후 정황 자료를 폭넓게 수집

5

향후계획

-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본건 전담수사팀을 '비상대응팀'으로 유지하여 국민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임 ☑